

# 난민 · 이주민 모의재판 대회 문제

## 1. 당사자

- 갑(남성, 만48세)은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A국적의 외국인입니다. 딸 병(만 14세)은 A국에서 2007년 갑과 배우자인 을(여성)을 부모로 출생하였습니다. 을은 병과 한국에 입국하였으나 지병으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갑은 을의 사망 전 한국에 입국하여 현재 딸 병과 함께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 2. 병의 난민인정

- A국은 종교적인 이유로 여성할례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병은 본인의 신체를 불가역적으로 침해하는 여성할례를 거부하였습니다. 갑과 을 역시 병의 여성할례를 거부했습니다. 병이 여성할례를 거부한다는 사실이 우연히 학교와 이웃에게 알려지면서 이웃들로부터 박해를 받기 시작했고, A국의 원리주의적 종교 단체에서도 병의 사례를 주목하여 병과 그 가족인 갑과 을을 온라인 상에 공개하면서 이들을 공격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 갑은 2017. 5. 만10세인 병을 위험한 상황에 계속 노출시킬 수 없다는 생각에 을, 병과 논의한 이후 이들을 먼저 한국으로 피신시켰습니다. 병은 2017. 12. 14. 난민인정을 받았지만[**처분서 사본** (\*인용된 서증은 모의재판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제공하지 않지만 모두 갖추어 졌다는 전제로 적절히 인용하여 서면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같습니다.)], 을은 박해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난민인정을 받지 못하고 대신 인도적체류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을은 얼마 후인 2018. 2. 남은 수명이 6개월 남짓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 3. 갑의 입국과 근로계약 체결

- 갑은 을에게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국에 입국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마침 A국은 한국과 고용허가제 인력 송출에 대한 MOU 체결 국가여서, 갑은 딸과 함께 있고 싶다는 소망과 을의 마지막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 혹시라도 을이 사망하는 경우 병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2018. 6. 3. 한국에 E-9 비자(비전문취업)로 입국하였습니다.

\* E-9은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비자입니다.

- 갑은 입국 이후 주식회사 B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근로계약서 사본]. 을은 갑이 입국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18. 8. 10. 사망했습니다. 장례를 치른 갑은, 자신도 A국에서 딸인 병에게 여성할례를 거부하도록 하여 원리주의 종교 단체에 의해 위협을 받은 적이 있고 또 병이 입국 후 난민지위를 인정받았으니 자신도 난민의 가족으로 안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 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갖고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갑은 여성할례의 당사자가 아니고, '난민법 제37조 제1항은 미성년자인 난민인정자에게 적용되지 않음'을 이유로 체류자격 변경 허가거부 처분을 내렸습니다[처분서 사본].

#### 4. 주식회사 B의 임금체불

- 주식회사 B는 갑이 "체류자격 변경 등을 위해 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하느라 자주 결근했다."거나, "을의 병간호를 위해 출근이 늦었다."라는 이유로 급여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회사 기숙사비, 기숙사에 병이 함께 거주하고 있다는 등 갖은 이유로 급여에서 비용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했습니다. 그것 마저도 2019. 7.경부터는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 갑은 체불임금을 받지 못해 2019. 12. 8. 소송을 제기하였고, 체불임금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에도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회사를 상대로 다시 임금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갑은 2020. 2. 10.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업장변경을 신청하였습니다. 갑은 법원출석과 소송준비를 해야 하고 또 집에 늦게까지 들어오지 않는 병을 찾아다니느라 2020. 5. 9.이 경과하도록 새로 이직할 사업장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갑은 사업장 변경 기한 3개월이 도과되어 출국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 전단).

- 갑은 지역 외국인지원센터를 통해 소송이 계속 중임을 이유로 법무부에 출국기한유예신청을 하였습니다. 법무부는 1~2개월씩 10차례에 걸쳐 출국기한을 유예하였으나, 2021. 3.이 되자 입장을 바꾸어 '갑이 수 차례 출국기한유예신청을 하였고, 민사소송에서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면 충분하므로 반드시 국내에 체류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더 이상의 출국기한유예를 거부하였습니다.

#### 5. 갑과 병의 한국 생활

- 병은 박해를 피해 한국에 입국했을 당시 다소 안심할 수 있었지만, 본국인 A국에서의 박해 경험으로 아직도 악몽을 꾸는 등의 심리적인 불안증세를 겪고 있습니다. 게다가 입국한지 1년 후에는 친모가 사망하여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병은 한국의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고, 언어습득이 빨라 다른 난민신청아동과 달리 자기 연령의 아동과 같은 학년 동급생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병의 적응이 빠르고 동급생과도 관계를 잘 맺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 병은 부친인 갑과 최근 갈등을 겪었습니다. 특히 갑이 정기적으로 수입을 얻지 못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자 집안일을 가지고도 자주 다투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문화에 익숙해진 병은 A국의 문화와 언어가 익숙한 갑의 사고방식이 점점 이해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갑은 병이 고등학교만 마치면 일을 하기를 원했지만 병은 대학이 가고 싶었습니다. 또 갑은 병이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들의 노래를 듣고 있으면 랩이 무슨 노래라며 음악을 끄곤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갑과 병의 관계가 최근 좋지는 않아 병이 아무 말 없이 집에 늦게 들어오는 일도 생겼습니다.

## 6. 갑에 대한 긴급보호명령

- 갑은 체류기간이 도과된 후에도 자신이 병의 유일한 양육자이고, 자신이 국내에 없으면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없다는 걱정 때문에 계속 체류하며 일당을 받는 일을 하였습니다.

-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는 소송을 대응하는 중, 갑이 E-9 비자를 취득하여 입국하기 위해 브로커를 통해 일부 서류를 위조하였음을 발견하였습니다. 대표이사는 괘씸한 마음에 갑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입국서류를 위조했다며 신고했습니다.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은 지역 외국인지원센터를 통해 갑에게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하였습니다. 갑은 외국인지원센터와 임금체불에 관하여 출국기간유예신청 거부처분을 반복하라고 항의해 왔기 때문에, 이 때문이라 생각하고 아무런 의심 없이 2021. 5. 20. 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하였습니다. 하지만 출입국외국인청은 조사종료 후 갑을 긴급보호(「출입국관리법」 제51조 제3항)<sup>1</sup> 하였습니다[**긴급보호명령서 사본**].

- 조사에 동석한 A국 통역인은 갑과 병과는 달리 A국의 주요 종교를 신앙으로 하고 있고, 한국에 거주하는 A국 커뮤니티에서는 갑과 병의 상황이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습니다. 조사관은 갑이 여

<sup>1</sup>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을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긴급히 보호할 수 있다.

러 차례 출국기한유예신청을 하거나 난민신청을 하는 등 한국에서 계속 일할 목적을 가지고 있고, E-9으로 입국하기 위한 서류도 고의로 위조하였을 것으로 보여 조사한다고 통역인에게 설명하였습니다. 조사 당시의 상황은 따로 녹음·녹화된 것이 없고 용의자신문조서(「출입국관리법」 제59조 제1항)에는 갑이 고의로 서류를 위조하여 오로지 한국에서 돈을 벌 목적으로 왔다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어를 모르는 갑은, 용의자신문조서에 “본인이 고의로 서류를 위조하여 오로지 한국에서 돈을 벌 목적으로 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음을 알지 못하고 통역인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믿고 용의자신문조서에 날인을 했습니다.

## 7.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 지역 외국인지원센터 담당자는 병로부터 아버지가 이틀째 집에 귀가하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고 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하여 아동을 보호할 계획도 없이 난민 아동의 유일한 양육자에게 보호명령을 한 조치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출입국외국인청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내 그룹홈에 연락하여 아동인 병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 이에 지역 외국인지원센터 담당자는 갑이 왜 긴급보호를 받았는지, 아동인 병이 혼자 집에 남는 상황을 고려한 처분인지 항의하였습니다. 그러자 출입국외국인청 담당 공무원은 갑과 병이 사는 곳을 방문해 보니 폐공장이므로 주거지를 속이고 아무 주소나 제시한 것이라고 보였다면서 “갑이 정확한 주거지를 밝히지 않았고, 주거불명으로 도주의 우려가 있어 긴급보호를 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갑과 병은 그 공장에서 실제로 월세를 내면서 살고 있었습니다[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임대인의 진술서]. 갑과 병은 거주에 적당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달리 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장을 개조한 주거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 8. 보호 이후 갑과 병의 근황

- 갑은 외국인보호소에서 생활하면서 최근 수년간 가족인 병이 겪은 박해, 배우자의 사망, 임금체불, 체류자격변경불허, E-9비자의 종료, 비적정 주거지에서의 거주, 출국유예기한의 종료 등을 겪으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난청 및 추간판탈출, 좌골신경통 등의 증세 악화로 지금은 걷지도 못하고 있습니다[갑의 진단서]. 외국인보호소 담당 의사도 현재 상태로는 갑에게 심각한 후유 장애가 예상되므로 외부진료를 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출입국외국인청은 2021. 5. 20. 긴급보호를 할 당시 갑으로부터 집에 14세인 난민인정자 병이 홀로 있으므로 자신이 단독으로 긴급보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담

당 공무원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출입국외국인청이 2021. 5. 21. 갑에게 강제퇴거 및 보호명령을 할 때도 갑은 집에 병이 홀로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제서야 담당 공무원은 관할 구청에 연락하여 아동의 보호를 의뢰해 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퇴근 시간이 지나 아동보호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연락이 되지 않았고, 5. 22.과 5. 23.은 토요일과 일요일이었습니다.

- 토요일인 5. 22.에 병으로부터 갑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지역 외국인지원센터는 긴급하게 병에게 식료품을 지원하였고, 동성인 직원들이 돌아가며 병을 안정시키며 주말 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병은 아직 놀란 상황이지만, 최근에 너무 많은 일을 겪어서 겉으로는 담담해 보였습니다. 병은 주말 밤에 평소에 친한 외국인지원센터 직원에게 처음으로 속마음을 털어 놓았습니다. 병은 출입국외국인청으로 따로 연락 받은 적은 없지만, 갑이 아마도 조사를 받으러 간 이후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지 걱정했습니다. 병은 요즘 아빠가 싫긴 했지만, 자신이 A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아빠까지 한국에서 떠나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막막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에서 친구들을 사귀긴 했지만, 그래도 하루 종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하는 곳으로 가고 싶지는 않다고도 했습니다. 학교 생활 정도는 잘 해 나갈 수 있지만 같이 살게 되면 다른 피부색 때문에 무슨 일을 겪을지 무섭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 출입국외국인청은 2021. 5. 24. 오전에 구청 아동보호 담당과에 연락해 병에 대한 보호를 의뢰했습니다. 아동복지 담당 공무원은 긴급하게 아동보호조치를 취하며 병을 관내의 보육원에 배치하려 했습니다(난민법 제31조,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 그러나 보육원에서는 외국국적으로 다소 나이가 있는 아동의 입소를 부담스러워 하면서 현재 정원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구청 담당 공무원이 관내 공동생활가정과 청소년쉼터 등에 연락을 하였으나 최근 유행하는 전염병 때문에 새로운 입소를 바로 받기는 어렵고 2주간 별도의 공간에서 격리해야 하는데, 현재 별도 공간이 없거나, 이미 별도 공간에 격리 중인 아동들이 있어 당장은 입소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병은 계속 폐공장을 개조한 공간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 9. 갑과 외국인지원센터의 의뢰

- 출입국외국인청은 여전히 갑에 대한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을 취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갑은 자신에 대한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 집행정지신청은 논외로 합니다.

- 이 소송과는 별도로 현재 갑의 난민불인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